

일반회계 과태료 고지서(납부서,독촉장) 등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35조, 제62조, 제118조,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 제26조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, 제24조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, 제9조, 제12조에 의거 고용보험, 일반회계 반환금,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, 과태료 고지서(납부서, 독촉장) 및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, 수취인불명,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,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9. 7.

경기도지방법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



1. 건명: 일반회계 반환금, 과태료 고지서(납부서, 독촉장) 및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
2. 근거: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제33조의3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,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2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: 붙임(공시송달 대상자 명단)
4. 공고기간: 2026. 9. 7. ~ 2026. 9. 21. (15일간)
5. 납부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경기도지방법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고용관리과(5층)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6. 기타사항은 경기도지방법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고용관리과 백인경(Tel 031-788-158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